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26 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 박정현 · 민병덕 · 장철민

이기헌・정준호・김 윤

이학영 · 오세희 · 김한규

서미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·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·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(이하 "공공기관등"이라 함)의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 설비로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기후 위기시대에 신·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등에게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·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 로 변경하고,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 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·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2조 및 제29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02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"투자권고"를 "투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"을 "위하여"로, "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"를 "출연하도록 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"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"을 "위하여"로, "설치하게 할수 있다"를 "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 외한다.

제29조 중 "권고를 받거나 의무를"을 "의무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2조(신·재생에너지사업에의 제12조(신·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투자 및 신·재생에너지 이용 이용의무화 등) ① 산업통상자 의무화 등) ① -----원부장관은 신·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・보급을 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위하여-----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 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 -----출연하도록 하여야 한 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다. 수 있다.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・ (2) --재생에너지의 이용 · 보급을 촉 진하고 신·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----위하여-----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・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 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

사용하도록 신·재생에너지 설 비를 의무적으로 <u>설치하게 할</u>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- 1. ~ 6. (생략)
- ③ (생 략)

제29조(재정상 조치 등)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, 신 ·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· 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금융상 · 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설치하도록 하여야
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의
경우에는 제외한다.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재정상 조치 등)
의무를
·